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 6.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4. 6. 22

다. 상 정 일 자 : 2004. 6. 22

(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총무과장 조 규 문

나. 제안이유

-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하고,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며,
- 복무감사 기능을 신설하고,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복무관련 제도 개선 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규정 (안 제6조의2)

· 비밀엄수 사항

-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복무감사기능 신설 (안 제12조의2)

-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복무상태를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복무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공무원을 징계처분할 수 있음.

- 토요일휴무제 실시 및 근무시간 조정(안 제13조 제1항, 안 제16조의2, 안 제18조)

-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규정 폐지

- 토요일 휴무 전면 실시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 보전
 - 동절기(11월~2월) 퇴근시간 1시간 연장
 -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
-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의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안 제23조)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안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안영순)

- 본 개정 조례안은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며,
- 복무감사 기능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안은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첨부 :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복무감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복무상태를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복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은 징계처분할 수 있다.

제1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②토요일 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 이상 6월 미만	3
6월 이상 1년 미만	6
1년 이상 2년 미만	9
2년 이상 3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2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원격기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제23조제4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하며,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으로 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별표3” 출산 일수란 중 “1”을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생략) <u>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행동윤을 준수하여야 한다.</u> <신설></p> <p><신설></p>	<p>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p> <p>제6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p>제12조의2(복무감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의 복무상태를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복무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을 징계처분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p> <p>② (생략)</p>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의2(토요일전일휴무제및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p>		<p>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p>	
<p>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p>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일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7일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10일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3일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6일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9일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2일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3일	6년이상	21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공가) (생략) 1.~8. (생략) <신설>			제22조(공가)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9. <u>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u>		
제23조(특별휴가) ①~③ (생략) ④ <u>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u> 은 <u>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u>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⑩ (생략)			제23조(특별휴가) ①~③ (생략) ④ <u>한국방송통신대학교</u> ----- ----- <u>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u> ----- ----- ----- ----- ⑤~⑩ (현행과 같음)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	----	-----	3

[현 행]

(별표 2)

공직자의 행동을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들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